

1.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
집단급식소, 식품접객업(음식점, 커피전문점 등) 매장 내에서 종이컵 사용이 금지되면서 매장에서의 다회용컵 세척을 위한 인력 고용, 세척시설 설치 부담 등 현장의 여건을 고려하여 1회용 종이컵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임.

2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생 략
- 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- 다. 합 의 : 해당기관 없음
- 라. 기 타 : -

환경부령 제 호

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

일부개정령안

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2 제1호가목 중 “종이컵, 합성수지컵”을 “합성수지컵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행			개정안		
[별표2] 사용억제·무상제공금지 대상 1회용품과 그 세부 준수사항			[별표2] 사용억제·무상제공금지 대상 1회용품과 그 세부 준수사항		
시설 또는 업종	대상 1회용품	준수 사항	시설 또는 업종	대상 1회용품	준수 사항
1. 「식품위생법」 제2조 제12호의 집단급식소 또는 같은 법 제36조 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	가. 1회용 컵 (종이컵, 합성 수지컵 및 금속 속박컵 등) (이하생략)	사용 억제	1. 「식품위생법」 제2조 제12호의 집단급식소 또는 같은 법 제36조 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	가. 1회용 컵 (합성수지컵 및 금속박컵 등) (이하생략)	사용 억제